

01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일회용 기저귀 관련 1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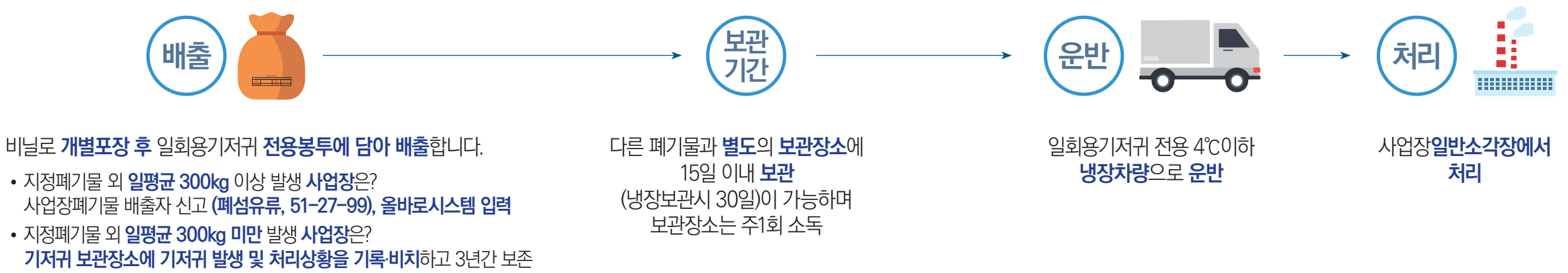


01 일회용기저귀 분류 관련

병원에서 단순 투약이나 재활치료만 받는 환자의 기저귀 분류 및 처리 방법은?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라 **감염병 환자, 감염병 의사환자,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**합니다.

그 외 환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**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**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※ 대기, 수질,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 대상에 해당

02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 관련

보관 장소 기준이 무엇인지? 보관장소는 기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와 같은 공간에서 보관해도 되는지? 이 경우 육안으로 구역 분리가 확실한 경우 인정가능한지?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5] 제5호다목2)나)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**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**하여야 하며, **다른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할 경우** 질의하신 **가벽 또는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 구획을 구분하여 보관**하시면 됩니다.

다만 불가피하게 기존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**밀폐구조**로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. 즉, 가벽 또는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는 구획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.



03 일회용기저귀 감염성 여부 판단기준

감염병의사환자와 병원체보유자 등 감염병 확인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데,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?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 비고 3호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의료진 판단하에 감염병 확진 전이라도, **감염증상 등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배출할 수** 있습니다.

다만,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없으며 확진 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,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



01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일회용 기저귀 관련 1-2



04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신고 관련

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루 평균 배출량 300kg의 예시를 들어 줄 수 있는지?

배출량 산출식?

사례 1 A 병원에서, 의료폐기물 50kg/일, 일회용기저귀 200kg/일, 그 외 일반폐기물 150kg/일이 배출할 경우
→ 사업장폐기물(기저귀+그 외 일반폐기물)을 총 350kg/일 배출하는 것으로, **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, 울바로시스템 입력대상**

사례 2 B 병원에서, 의료폐기물 50kg/일, 일회용기저귀 200kg/일, 그 외 일반폐기물 50kg/일이 배출할 경우
→ 사업장폐기물(기저귀+그 외 일반폐기물)을 총 250kg/일 배출하는 것으로, **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에 미해당, 울바로시스템 미입력대상**



05 일회용기저귀 개별포장 관련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개별포장 후 전용봉투에 배출해야하는데 개별포장 방법은 무엇인지? 봉투의 기준이 있는지?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5] 제3호나목7) 규정에 의거 **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비닐로 개별 포장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전용봉투에 담아야** 합니다. 즉, **개별 포장의 방법 및 봉투규격 기준은 없습니다.**

개별 밀폐포장이란 일회용기저귀 한개씩 포장해야 한다는 것인지? 또한 밀폐포장이란 진공포장을 말하는 것인지?

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**개별 밀폐 포장**은 진공포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기저귀를 **하나씩 싸서 밀봉(묶어서 배출하는 방법 포함)**하는 것을 말하며, 개별 포장된 일회용기저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·운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01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일회용 기저귀 관련 1-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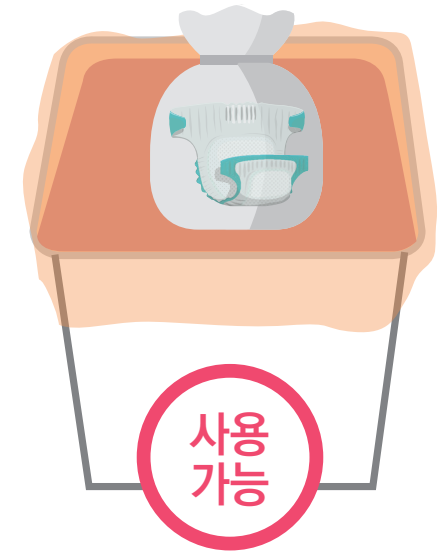
06 일회용기저귀 관련 기타 질의

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자가처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가능한지?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0항의 규정은 **의료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분을 업(業)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·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자가처리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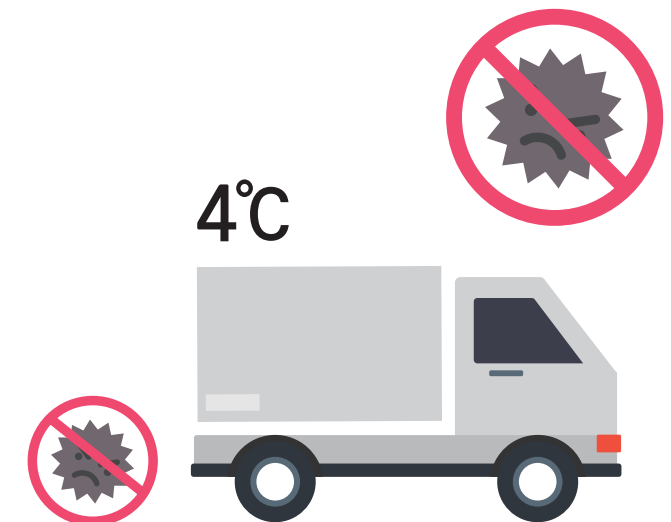
병원 내부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수집할 경우 전용봉투를 일반쓰레기통에 씌어서 사용 가능한지?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거치를 위한 일반쓰레기통 사용 여부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**사용이 가능**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

보관은 실온에서 하는데, 냉장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는?

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나, **약취, 세균증식 등 위생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수집·운반 규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**한 것입니다.



사군·구청에서 조례상 수집·운반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근거는?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기 제1호가목1)다)에 **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시설·장비기술능력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기]의 비고 제8호라목에 규정**하고 있으며, 위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인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,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며,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4°C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사업계획 및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(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 51-27-99)

- 또한,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의료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 차량 감차 변경신고(→환경청)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장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※ 다만,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